

등록번호	보건행정과-6295
등록일자	2015. 4. 29.
결재일자	2015. 4. 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건강도시팀장	보건행정과장	보건소장		
정명자	서원애	고시환	전결 04/29 서명옥		
협조자					

-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-

## < 2015년 제1차 >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지도 단속결과 보고

- 단속기간 : 2015.4.13.(월)~26(일) ⇒ 주 2회 이상 야간단속, 주말단속 1회이상
- 단속일정
  - 주중 : 4.16(목), 17(금), 21(화), 23(목) / 18:00~20:00
  - 주말 : 4.18(토), 25(토) / 14:00~20:00
- 단속대상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 ~ 제26호 해당시설
  - 금연시설 현황 : 27,240개소
  - 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 : 1,191개소

시설점검 및 단속현황

금연구역 점검건수	흡연실 설치건수	금연구역 흡연위반		
		단속건수	과태료금액	전자담배 건수
576건	39건	55건	5,450,000원	-

장소별 단속현황

총계	금연시설				금연구역		
	공공청사	금연건물	PC방	음식점	강남대로	대치동학원가	영동대로
55건	2	9	35	2	2	2	3

2015. 4. .

강 남 구  
(보건행정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 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「국민건강증진법」: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, 제34조(과태료), 제35조(과태료부과·징수절차), 동법 시행령 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 •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,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• 2015년도 금연구역 합동 지도·단속 계획 : 서울시 건강증진과 -7833(2015.4.9)호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보건복지부(건강증진과), 서울시(건강증진과)의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·단속 계획에 의거 연계 추진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비예산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강남구민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 ○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○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국가 정책으로 타자치구 시행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 없음.

## < 2015년 제1차 >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지도 단속결과 보고

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조기 정착과 금연정책의 대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연이행 정도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합동지도 단속결과 보고임.

☞ ‘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 단속계획’ 보건의정과-5465(2015.4.14.)호와 관련임.

### I 추진개요

- 단속기간 : 2015.4.13.(월) ~ 26(일)
  - ➔ 주 2회 이상 야간단속, 주말단속 1회이상
- 단속대상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 ~ 제26호 해당시설
  - 금연시설 : 27,240개소(계업업소, 음식점, 사무용복합건축물, 의료기관 등)
  - 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: 1,191개소(금연거리, 공원, 학교정화구역 등)
- 단속방법 : 단속반 편성 및 운영(2인 1조, 3개조)
  - ➔ 단속요원, 금연지도원, 금연사업 담당 등
- 단속일정
  - 주중 : 4.16(목), 17(금), 21(화), 23(목) / 18:00~20:00
  - 주말 : 4.18(토), 25(토) / 14:00~20:00
- 중점단속 사항
  -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
  -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
  -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
  - 특히,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
- 위반시 조치
  - 1차 위반시 170만원, 2차 위반시 330만원, 3차 위반시 500만원
  -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시 : 과태료 10만원 처분
  - 모니터링 결과 유형별 위반 사례 파악

### II 추진결과

#### 시설점검 및 단속현황

(단위 : 건, 원)

구 분	금연구역 지정위반 점검건수	흡연실 설치건수	금연구역 흡연위반		
			단속건수	과태료금액	전자담배 건수
공공청사	8	-	2	200,000	-
학교 및 어린이집	5	-	-	-	-
의료기관	3	-	-	-	-
아동청소년시설	-	-	-	-	-
터미널 및 운송수단	-	-	-	-	-
공연장,체육·사회복지시설	-	-	-	-	-
대규모시설	29	-	9	900,000	-
목욕장, 만화방, 숙박업소	-	-	-	-	-
음식점	482	2	2	200,000	-
고속도로 휴게소	-	-	-	-	-
PC방	49	37	35	3,450,000	-
금연거리(조례)	-	-	7	700,000	-
계	576	39	55	5,450,000	-

#### 장소별 단속현황

구분	일계	금연시설				금연구역		
		공공청사	금연건물	PC방	음식점	강남대로	대치동학원가	영동대로
4.13(월)	7			7				
4.14(화)	6		1	4	1			
4.15(수)	7		3	4				
4.16(목)	2			1		1		
4.17(금)	5		2	2	1			
4.18(토)	2					1	1	
4.20(월)	10	2	2	3		1	2	
4.21(화)	7			6			1	
4.23(목)	2			2				
4.24(금)	1		1					
4.25(토)	6			6				
총계	55	2	9	35	2	2	3	

> 2015년 단속건수(2015.1.1.~4.25) : 314건

시간대별 현황

점검 건수	계		주 간 (08~18시)			야 간 (18~08시)			휴 일		
	과태료		점검 건수	과태료		점검 건수	과태료		점검 건수	과태료	
	건수	부과액		건수	부과액		건수	부과액		건수	부과액
576	55	5,450,000	432	20	2,000,000	120	27	2,650,000	24	8	800,000

**III** **향후계획**

흡연단속 : 6명(시간선택제임기제-4, 기간제근로자-2)

- 3개조(2인 1조) 편성 운영 : 주간 및 야간,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
  - 평일 : A조(09:00~17:00), B조(14:00~21:00), C조(15:00~22:00)
  - 토요일(2, 4주) : 13:00~20:00 ➔ 평일 대체휴무
- ※ 금연사업 관련 온라인, 오프라인, 전화 민원처리(시간선택제임기제-1)

금연지도 및 시설점검 : 금연지도원(8), 공공근로(2)

- 2인 1조 운영 : 금연시설점검표에 의거 음식점 등 금연시설 점검 실시
  - 2015년 상반기중에 100㎡ 미만 모든 음식점 점검 실시